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5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20.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E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 9. 11. 접수 제24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20.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E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 9. 11. 접수 제24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는 E의 형제이다.

나. E은 2020. 9. 11. 이전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상태에 이르러, 당시 원리금이 원금 9,391,549원, 이자 및 연체료 956,539원 등 합계 10,348,088원에 달하였다. 원고는 2021.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 지급명령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차전1223). 2023. 7. 7. 현재 E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액은 11,150,402원(원금: 9,409,939원 및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이다. 다. E은 2020. 9. 11. 채무초과 상태(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극재산: 약 42,362,000원)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지분과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E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즉시 또는 그 후 E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그에 대하여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0. 12. 29. 무렵 E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성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E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변(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그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856만원(공시지가)이거나 그곳에 묘소가 존재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보다 낮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9.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미변제시 그 명의의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E이 결국 돈을 갚지 못하므로 증여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은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E이 형제 사이인 점, E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나 E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 스스로 E이 그 전에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관련 법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나. 구체적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20.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E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 9. 11. 접수 제24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 9. 11. 접수 제24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별지